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9 - 71
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사유

민선7기 행정기구 개편 및 돌봄SOS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인력 확보를 위하여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를 1,420명에서 1,455명으로 증원(안 제2조)

- 행정기구 개편(1국 2과 7팀 신설)에 의한 정원 증원 : 17명
- 돌봄SOS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 : 18명

나.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한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비율 조정(안 별표 2)

- 7급 : 32%⇒33%(+1%) / 8급 : 32%⇒33%(+1%) / 9급 : 7%⇒5%(△2%)

## 3. 개정조례안 : 붙임 참조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- 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(정원의 관리)부터 제30조(정원의 규정)까지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9. 5. 15. ~ 5. 16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4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420명”을 “1,45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391명”을 “1,426명”으로 한다.

별표 2 중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
비율	(1%) 이내	(5%) 이내	(22%) 이내	(33%) 이내	(33%) 이내	(5%) 이상	(1%) 이내

별표 3 중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직급별 \ 기관별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사업소	동
<b>총 계</b>	1,455	1,455				
<b>일반직 계</b>	1,444	1,444				
4급	8	6	1	1		
5급	63	36	1	9	1	16
<b>6급 이하 계</b>	1,371	1,371				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<u>1,420명</u>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: <u>1,391명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[별표 2]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</p> <p>1. 일반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구분</th> <th>4급 이상</th> <th>5급</th> <th>6급</th> <th>7급</th> <th>8급</th> <th>9급</th> <th>전문경력관</th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(1)% 이내</td> <td>(5)% 이내</td> <td>(22)% 이내</td> <td><del>(32)%</del> 이내</td> <td><del>(32)%</del> 이내</td> <td><del>(7)%</del> 이상</td> <td>(1)% 이내</td> </tr> </table> <p>2.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 <p>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 rowspan="2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 colspan="6">총 계</th> </tr> <tr> <th>총 계</th> <th>구분청</th> <th>의회 사무국</th> <th>보건소</th> <th>사업소</th> <th>동</th> </tr> <tr> <td>총 계</td> <td><u>1,420</u></td> <td colspan="5"><u>1,420</u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7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일반적 계</td> <td><u>1,409</u></td> <td colspan="5"><u>1,409</u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7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<u>7</u></td> <td><u>5</u></td> <td><u>1</u></td> <td><u>1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<u>61</u></td> <td><u>34</u></td> <td><u>1</u></td> <td><u>9</u></td> <td><u>1</u></td> <td><u>16</u></td> </tr> <tr> <td>6급 이하 계</td> <td><u>1,339</u></td> <td colspan="5"><u>1,339</u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7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able>	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	비율	(1)% 이내	(5)% 이내	(22)% 이내	<del>(32)%</del> 이내	<del>(32)%</del> 이내	<del>(7)%</del> 이상	(1)% 이내	기관별 직급별	총 계						총 계	구분청	의회 사무국	보건소	사업소	동	총 계	<u>1,420</u>	<u>1,420</u>					(현행과 같음)							일반적 계	<u>1,409</u>	<u>1,409</u>					(현행과 같음)							4급	<u>7</u>	<u>5</u>	<u>1</u>	<u>1</u>			5급	<u>61</u>	<u>34</u>	<u>1</u>	<u>9</u>	<u>1</u>	<u>16</u>	6급 이하 계	<u>1,339</u>	<u>1,339</u>					(현행과 같음)						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1,455명</u>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1,426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2]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</p> <p>1. 일반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구분</th> <th>4급 이상</th> <th>5급</th> <th>6급</th> <th>7급</th> <th>8급</th> <th>9급</th> <th>전문경력관</th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(1)% 이내</td> <td>(5)% 이내</td> <td>(22)% 이내</td> <td><del>(32)%</del> 이내</td> <td><del>(33)%</del> 이내</td> <td><del>(5)%</del> 이상</td> <td>(1)% 이내</td> </tr> </table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 rowspan="2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 colspan="6">총 계</th> </tr> <tr> <th>총 계</th> <th>구분청</th> <th>의회 사무국</th> <th>보건소</th> <th>사업소</th> <th>동</th> </tr> <tr> <td>총 계</td> <td><u>1,455</u></td> <td colspan="5"><u>1,455</u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7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일반적 계</td> <td><u>1,444</u></td> <td colspan="5"><u>1,444</u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7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<u>8</u></td> <td><u>6</u></td> <td><u>1</u></td> <td><u>1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<u>63</u></td> <td><u>36</u></td> <td><u>1</u></td> <td><u>9</u></td> <td><u>1</u></td> <td><u>16</u></td> </tr> <tr> <td>6급 이하 계</td> <td><u>1,371</u></td> <td colspan="5"><u>1,371</u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7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able>	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	비율	(1)% 이내	(5)% 이내	(22)% 이내	<del>(32)%</del> 이내	<del>(33)%</del> 이내	<del>(5)%</del> 이상	(1)% 이내	기관별 직급별	총 계						총 계	구분청	의회 사무국	보건소	사업소	동	총 계	<u>1,455</u>	<u>1,455</u>					(현행과 같음)							일반적 계	<u>1,444</u>	<u>1,444</u>					(현행과 같음)							4급	<u>8</u>	<u>6</u>	<u>1</u>	<u>1</u>			5급	<u>63</u>	<u>36</u>	<u>1</u>	<u>9</u>	<u>1</u>	<u>16</u>	6급 이하 계	<u>1,371</u>	<u>1,371</u>					(현행과 같음)						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(1)% 이내	(5)% 이내	(22)% 이내	<del>(32)%</del> 이내	<del>(32)%</del> 이내	<del>(7)%</del> 이상	(1)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 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총 계	구분청	의회 사무국	보건소	사업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u>1,420</u>	<u>1,42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적 계	<u>1,409</u>	<u>1,409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<u>7</u>	<u>5</u>	<u>1</u>	<u>1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<u>61</u>	<u>34</u>	<u>1</u>	<u>9</u>	<u>1</u>	<u>16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 계	<u>1,339</u>	<u>1,339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(1)% 이내	(5)% 이내	(22)% 이내	<del>(32)%</del> 이내	<del>(33)%</del> 이내	<del>(5)%</del> 이상	(1)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 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총 계	구분청	의회 사무국	보건소	사업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u>1,455</u>	<u>1,455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적 계	<u>1,444</u>	<u>1,444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<u>8</u>	<u>6</u>	<u>1</u>	<u>1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<u>63</u>	<u>36</u>	<u>1</u>	<u>9</u>	<u>1</u>	<u>16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 계	<u>1,371</u>	<u>1,371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**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 비용추계서**

**1. 비용추계 요약**

가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(1) 발생요인 : 정원 증원(35명)에 따른 인건비
- (2) 관련조문 : 동 개정조례안 제2조

**2. 비용추계의 전제**

- 가. 행정안전부의 2019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내에서 예산운용
- 나. 인건비 단가는 2019년 직급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

**3. 비용추계의 결과**

가. 정원 증원(35명)에 따른 '19년 추가소요 인건비 : 총 661,742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인원	총 인건비	산출근거	비고	
계	35	661,742			
기구 개편	소계	17	602,679	※ 직급별 평균연봉(호봉) 기준액	
	일반직 (17)	1	42,188	101,249(4급 평균연봉)×1명×5/12월	
		2	70,583	84,699(5급 평균연봉)×2명×5/12월	
		7	225,937	77,464(6급 27호봉)×7명×5/12월	
		7	263,971	63,353(7급 17호봉 기준)×10명×5/12월	
돌봄 SOS	소계	18	59,063	※ 서울시 공모사업 예산지원 기준	시:구(75%:25%)
	사회직(9)	9	28,125	30,000(9급 4호봉)×9명×5/12월×25%	시비 84,375
	간호직(9)	9	30,938	33,000(8급 3호봉)×9명×5/12월×25%	시비 92,814

나. 기준인건비 편성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9년 기준인건비	2019년 편성예산	비고
금액	122,874,737	120,052,153	

※ 기준인건비 내 증원 인력 운영 가능(편성 여유분 2,822,584천원)

**4. 재원조달 방안 : 구비 추정편성**

**5. 덧붙이는 의견 : 비용추계의 세부세출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**

**6. 작성자 : 안전행정국 총무과 전보아 (☎8216)**